

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. 8. 31 선고 2015가단1222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(개명전 이름 : D)

3. E(개명전 이름 : F)

변론 종결2016. 8. 10.

판결 선고2016. 8. 3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각 철거하고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를 각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피고 1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3. 피고 2 내지 3에 대한 청구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이상완

별지